

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3. .
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기존 「지방세법」이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분법 됨에 따라 제·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및 명확화

- 지급대상 중 적용되는 공무원 직급 명확화(안 제2조제3항)
- 탈루세월발굴에 대한 지급규정 신설(안 제3조제1항제5호)

나. 법령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 변경

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39조 ⇒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(안 제9조제3항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(안 제1조)

3. 근거법규 : 행정안전부 표준안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1. 2. 28. ~ 3. 19.(의견 없음)

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국장급”을 “4급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납세의무성립일(등기일 포함)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. 다만,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39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과년도채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(단위 : 원)

징수 월 일	징수자		채납자			징수내역				징수 확인 (과장)	특별징수 공적(사유)	포상금 구 청 (지급액)	지 급 일
	직	성명	주 소	성명	주민등 록번호	년도 기분	과세 번호	세 목	징수 액				

210mm 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[별지 제2호서식]

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(단위 : 원)

구분	부과자(제보자)		발굴 세액	납세의무자			납기	징수 일자	징수 확인 (과장)	포상금지급		
	직급 (주소)	성명(주민 등록번호)		주소	성명	주 민 등록번호				포상 금액	지급 일자	사유

210mm 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[별지 제3호서식]

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

구 분	건 수	징수(부과)금액 (원)			포상금 (원)	비고
		본세	가산금	계		
계						
과년도 채납액 징 수	1년차					
	2년차					
	3년차 이상					
숨은세원 발굴	미 등 기					
	탈루은닉세원					
	무단점용					
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	세정발전					
	세입증대					

『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.

- 붙임 : 1. 과년도채납액 징수내역 1부
 2. 숨은세원발굴 징수내역 1부
 3.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1부

년 월 일

소속 (일반인의 경우 주소)

직급 (일반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)

성명 (인)

입금계좌 : 금융기관명

계좌번호

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(이하 '포상금'이라 한다)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세입징수 포상금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지급대상) ① ~ ②(생략)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조(지급대상) ① ~ 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4급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지급기준)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1. ~ 4.(생략) <신 설> 5.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.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②(생략)</p>	<p>제3조(지급기준) ①----- -----. 1. ~ 4.(현행과 같음) 5. 납세의무성립일(등기일 포함)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. 다만,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.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환수) ① ~ ②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기간은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로 하며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39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환수) 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<u>제65조</u>----- ----- -----.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815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. 3. 30(수)

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 : 2011. 3. 30(수)

라. 위원회 상정 : 2011. 4. 8(금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윤병진 총무국장)

- 기존 「지방세법」이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분법 됨에 따라 제·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및 명확화

○ 지급대상 중 적용되는 공무원 직급 명확화(안 제2조제3항)

○ 탈루세원발굴에 대한 지급규정 신설(안 제3조제1항제5호)

나. 법령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 변경

○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39조 ⇒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(안 제9조제3항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(안 제1조)

5. 관련법규 :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

6. 검토의견

● 본 조례는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
● 주요 개정 내용은

- 지급대상 공무원 중 “국장급”을 “4급”으로 하여 직급을 명확히 함으로써 광역시와 혼선을 방지코자 하며,
-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, 지급기준이 없어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임.

● 이러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,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